



제 1340호

2017년 1월 26일 금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공 고	
○ 공	고 제 1 9 2 호 개발제한구역 주민 생활비용 보조사업 안내 공고 2
고 시	
○ 고	시 제 1 3 호 도로명주소 고시 4
○ 고	시 제 1 4 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6차) 고시 공고 [논현동 765-1번지] 7

회 람								
--------	--	--	--	--	--	--	--	--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7-192호

개발제한구역 주민 생활비용 보조사업 안내 공고

국토교통부와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 개발제한구역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를 대상으로 주민들의 생활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2017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 생활비용 보조사업』에 대하여 생활비용 보조사업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31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1. 사업명: 개발제한구역 주민 생활비용 보조사업
2. 지급금액: 연간 600,000원 이내
3. 신청자격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 개발제한구역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
 -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4,407,116원 이하인 세대
4. 지원 항목
 - 지원 항목을 증빙할 수 있는 납입 영수증(전년도)을 신청 시 첨부 제출
5. 지원대상자 결정방법: 지원신청서 접수 → 지원대상자 심사 → 결정 및 개별 통보
6. 신청접수 등
 - 신청서 접수기간: 2017. 2. 1. ~ 2017. 2. 28.
 - * 지급 예정: 2017. 5. 이후
 - 접수 및 문의: 남동구청 도시관리과(그린벨트팀)
Tel 032-453-2970, Fax 032-450-2959
 - 신청 시 제출서류
 - 1) 생활비용 보조 신청서 1부
 - 2) 소득·재산신고서 1부
 - 3)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4) 비용 보조를 신청하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그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 5) 기타 신청인이 생활비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개발제한구역 주민 생활비용 보조사업 안내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및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27조의2 관련

1. 국토교통부와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에 대한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나아가 복지증진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매년 생활비용 보조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생활비용 보조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형질변경을 하는 자로부터 징수한 보전부담금을 활용하여 국가가 70-90%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10-30%의 지방비를 마련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을 대상으로 세대별 60만원 한도로 지급

3. 생활비용 보조사업의 대상이 되는 자의 범위

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개발제한구역에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생업을 위하여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하였던 자를 포함 하되, 세대주 또는 직계비속 등의 취학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기간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한 기간으로 본다.)

나. 해당 가구의 월 소득액에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전년도 통계청 발표자료 기준으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4,407,116원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신청 당시 최근 3년간 3회 이상 개발제한구역법령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이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 소득평가액 =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의 종류별 가액+금융재산-기초공제-대출금)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4. 위의 생활비용보조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세대주는 아래의 구비서류를 2017년 02월 28일까지 남동구 도시관리과(T. 032-453-297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생활비용이 보조사업이 저소득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점을 고려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신청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 서류	1. 생활비용 보조 신청서 1부 2. 소득·재산신고서 1부 3.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4. 비용 보조를 신청하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그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5. 기타 신청인이 생활비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	---

2017년 월 일

남동구청장

직인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17-13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등에 부여 및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5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153번길 20 외 1건

○ 폐지대상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66번길 17 외 4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람(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 고	
별 도 열 람(5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0)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 1. 1.부터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으로 도로명주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남동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 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22-15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153번길	20	2009. 11.16	용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54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7. 01.25	건물등의주된출입구가용천로153번길20번 기초구간에위치하여20을건물번호로부여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389-2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실로	101	2009. 11.16	음실이라는 옛 지명을 인용하여 제명	2017. 01.25	건물등의주된출입구가음실로101번 기초구간에위치하여101을건물번호로부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48-12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66번길	17	2017.01.18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48-13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176번길	17-1	2017.01.18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48-14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176번길	13	2017.01.18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4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5-262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94번길	23-8	2017.1.20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5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5-263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94번길	23-6	2017.1.20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 2017- 14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

주택법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 1. 26.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1. 사 업 명

- 이안 라온파미에 하우스 신축공사

2. 사업주체의 성명, 주소

- 성 명 : (주)코람코자산신탁(대표자: 정용선)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19층(삼성동, 골든타워)

3. 사업 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765-1번지
- 사업규모 : 공동주택(연립주택)/부대 · 복리시설
지하1층, 지상4층(주건축물 18개동, 298세대)
- 건축면적 : 13,950.9254㎡
- 연 면 적 : 70,347.7034㎡
- 사 업 비 : 111,906,345천원

4. 사업시행기간(예정)

- 당초 : 2015. 11. 20. ~ 2017. 3. 31, 변경 : 2015. 11. 20. ~ 2017. 6. 30.

5. 주택법 제1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6. 관계도서는 우리 구 건축과(☎032-453-2793)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자에게 보입니다.